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5. 10.(목) / 총 5매(본문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김정한 • ☎ (044) 201-3814
	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		• 처장 정광영, 부장 류병의, 차장 홍가희 • ☎ (054) 459-7576, 7571, 7572
보 도 일 시		2018년 5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

설치 10년 경과한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… 검사원 자격요건도 강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, 주차장법 개정(17. 3.)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(18. 5.)하여 5월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.

○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가 급증하고,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계의 노후에 따른 결함 등으로 분석됨에 따른 대책이다.

* ‘10년: 2건(사망2명)→ ’15년: 10건(사망5명, 부상5명)→ ’17년: 20건(사망9명, 부상9명)

○ 이에 따라,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.

○ 또한,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,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.

* (중대한 사고) ▲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, ▲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, ▲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

□ '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를 위해서, 기계식 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4만 7,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.

* 자동차 등록 현황: ('97년) 1,041 만대 → ('17년) 2,252만대 (2.2배 증가)

**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: ('97년) 3,430 기 → ('17년) 47,475기 (13.8배 증가)

○ 이 가운데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%을 차지하며, 장기간 사용하면서 기계의 마모,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.

10년 이상 기계식주차장			전체 ('18.3기준)
10년~20년	20년 초과	계	
18,827 (39.7%)	17,241 (36.3%)	36,068 (76.0%)	47,475

□ 그간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년 마다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었으나, 일반장비를 이용한 샘플링 검사로 진행되어 기계의 결함을 사전에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.

○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고 기계 결함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,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, 진동 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,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,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,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'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* 설치 후 20년 ↑ : '18. 5월부터 시행, 설치 후 10년~20년 : '20. 3월부터 시행

- 또한,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며,



* 기존의 정기검사(2년 주기)는 지속적으로 수행 예정

-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.

* 전문 기술교육 시행(55명) : 1차 28명('18.1.18~2.14), 2차 27명('18.2.19~3.19)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이번 정밀안전검사 시행을 계기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,

- “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·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김정한 사무관(☎ 044-201-3814), 한국교통안전공단 특수검사처 류병의 부장(☎ 054-459-7576), 홍가희 차장(☎ 054-459-7571), 오균빈 과장(☎ 054-459-75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주요내용

□ 정밀안전검사 제도 개요

- (목적)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기계·전기적 결함 등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
- (검사 대상) ①설치된 후 10년 지난 경우, ②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③사용·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 경우 등
 - * (중대한 사고) ▲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, ▲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, ▲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
- (검사주기) 4년 (단, 정밀안전검사가 시행된 연도에 정기검사는 면제)

□ 주요 검사 항목

승하강 장치 검사	베어링 결함검사	체인 검사
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초음파탐상기를 이용하여 구동축 내부 크랙 및 용접부 결함 등 확인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동측정기를 이용하여 베어링의 결함 확인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전동·구동 체인 마모 확인
와이어로프 검사	안전장치 검사	조도 검사
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와이어로프 하중측정기를 이용한 안전도 검증 ▶ 와이어로프의 직경 감소율 측정으로 마모 확인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PLC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오류, 결함 등 검출 	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조도계를 이용하여 주차장치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조도를 측정

참고 2 정밀안전검사와 정기검사 비교

□ 정기검사 ('98년~)

- 기계 마모, 소음 등을 육안, 청각 등 간단한 장비로 수행하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

□ 정밀안전검사 ('18.5월~)

-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사용 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(4년 주기)

* 단, 정밀안전검사와 검사시기가 동일한 해에는 정기검사 생략

구분	정기검사 (종전)	정밀안전검사 (신규)
검사원 구성	2명(기계 또는 전기)	2명(기계 또는 전기) * 단, 신규교육 160시간 이수
검사주기	사용검사 후 3년, 이후 매 2년마다 실시	10년 경과 후 4년마다 실시 * 중대한 사고발생 시에도 시행
검사비율	샘플링 검사	전수검사
검사장비	법정상비 5종 * 접지 및 절연저항계, 버니어캘리퍼스 등	법정상비 23종 * 기존장비 외 초음파탐상측정기, 와이어로프테스터, 열화상카메라, 초음파두께측정기, 레이저수평계 등
검사방법	육안에 의한 검사가 다수 * 기계 마모, 소음 등을 육안 청각으로 검사	전문장비에 의한 검사 * 초음파탐상기, 열화상카메라, 진동계, 내시경 등 고도화된 전문장비 이용
제어프로그램 (PLC) 검사	없음	프로그램 오류 검사 및 진단
안전도 검토	없음	실측 자료로 안전도 검증